

대법원 2019다3226 손해배상, 2019다216787 손해배상, 2019다220021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들에서,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24. 1. 25. 선고 2019다3226 판결, 2019다216787 판결, 2019다220021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 등 피해자들은 1944년경부터 1945년경 사이에 주식회사 후지코시(구 상호: 후지코시 강제공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동원되어 강제 노동을 하였음
-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의 하나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청구권협정’)을 체결함
-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되었던 망 정○○ 등 2000. 5. 1. 부산지법에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2007. 2. 2. 청구기각판결 → 2009. 2. 3. 항소기각판결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2012년 판결)] → 2013. 7. 30.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 한편, 대법원은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파기환송)]의 재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는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3다67587 판결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임

2. 소송의 경과

- 제1심: 원고들 일부 승(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 2019다3226: 피해자별 각 1억 원 또는 8천 만 원
 - 2019다216787, 2019다220021: 피해자별 각 1억 원
- 원심: 피고의 항소 기각
 -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가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요 쟁점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멸시효 남용 사유로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다. 주요 쟁점 관련 판단 근거

■ 관련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 및 2009다22549 판결(2012년 판결)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었고,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으며, 피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음
-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그로써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고,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도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등과 같은 피해자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음

- 대법원은 2012년 판결 중 2009다68620 사건의 재상고심인 2013다61381 사건 판결(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같은 취지의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이로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음
-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라. 기타 쟁점 관련 판단

- 2019다3226 사건 상고이유 판단: 외국재판 승인 관련
 - 원고 등을 비롯한 근로정신대원 중 일부가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및 '여자정신근로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위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위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외국재판 승인요건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세 사건 공통 상고이유 판단: 강제노동 경위 등 관련

- 2019다3226: 원고 등이 일본국 정부와 피고의 기망, 회유, 협박 등에 의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로 동원되어 그 의사에 반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열악한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는 등 자유를 억압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2019다216787, 2019다220021: 원고 등이 일본국 정부와 피고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로 동원되어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가 현저하게 억압된 채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세 사건 공통 상고이유 판단: 청구권협정 관련

-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